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. 4. 19 선고 2022가단1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19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0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5,448,9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5,448,9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정현

별지